

(붙임)

2015년 달라지는 증시 및
파생상품시장 제도

2014. 12

한국거래소

가. 추진 배경

□ 「주식시장 발전방안(11.26, 금융위)」에 의거, 가격제한에 따른 비효율성이나 불공정거래 소지를 해소하기 위해 현행 가격제한폭 *을 충분한 수준으로 확대하고 시장안정화 장치 개편

* 全종목 ±15%, 유가 '98년, 코스닥 '05년

나. 주요 내용

① 가격제한폭 확대($\pm 15\% \rightarrow \pm 30\%$)

□ 코스피·코스닥시장의 가격제한폭을 종가대비 ±30%로 확대

② 시장안정화 장치 정비

□ 가격제한폭 확대로 인해 과도한 가격급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장 안정화 장치를 전면 개편

- 서킷브레이커(CB) 제도를 지수하락률 단계별 발동구조로 전환*

* (현행) 지수가 10% 하락시 20분간 거래정지, 10분간 단일가 매매
 (개선) 지수가 8%, 15%, 20% 하락시 각각 발동. 1.2단계 발동시에는 20분간 거래정지후 10분간 단일가 매매, 3단계 발동시에는 당일 거래정지

- 既 운영중인 변동성 완화장치(동적 VI, '14.9월) 외에 정적 VI 신설*

* 동적 VI : 예상체결가격-직전체결가격 괴리시(2~3%이상) 단일가(2분간) 전환

** 정적 VI : 예상체결가격-직전단일가격 괴리시(10%이상) 단일가(2분간) 전환하고, 단일가매매가격을 기준으로 ±10% 변동폭 재설정

- VI 완비로 기능이 중복되는 단기과열완화 장치는 단계적으로 폐지*

* (현행) 1일간 거래정지 후 3일간 단일가매매

(개선) 거래정지 제도를 우선 폐지(VI 운영상황을 감안 중장기적으로 완전폐지 추진)

③ 시행시기 : '15년 상반기

가. 추진 배경

- 주식시장의 거래가 일부 대형주에 집중되고 상당수 중소형주의 경우 거래가 극히 부진*
 - * 거래량 상위 20% 종목이 전체 거래량의 80%를 차지, 하위 50% 종목은 전체 거래량의 3.8% 수준에 불과하며 스프레드비율이 높고 가격연속성도 낮음('14.3Q)
- 기업실질은 우량하나 유동성이 낮아 효율적 균형가격 발견이 어려운 종목을 대상으로 시장조성자(Market Maker) 도입을 통해 주가변동성 완화 및 원활한 유동성 공급을 지원해 나갈 필요

나. 주요 내용

① 시장조성자(Market Maker) 제도 도입

- (개념) 거래소와 계약을 체결하여 시장내 유동성을 공급하고 수수료 등 거래소로부터 대가를 지급받는 거래소 회원
 - 유동성공급자(LP, Liquidity Provider)가 관리종목 지정*을 회피하기 위해 상장법인-회원간 자율적 계약에 의해 체결되는 것과 차이
 - * 거래량 미달 : 반기(코스닥은 분기)의 월평균거래량이 유동주식수의 1% 미만
- (대상기업) 거래소가 해당 기업의 시가총액, 거래량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장조성자 의무지정 기업 선정* 등을 위한 구체적 기준 마련후 지정 예정
 - * (예시) 시가총액 상위 50%이면서 거래량 하위 50%에 속하거나 일일 거래량이 20 만주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는 종목 등(주식시장 발전방안, 금융위, 11.26일)
- (인센티브) 시장조성자의 적극적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거래소가 수수료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

② 시행시기 : '15년 상반기

3

자기주식 매매 호가제도 개선 (유가/코스닥/코넥스)

가. 추진 배경

- 상장법인의 자기주식 매매시 불공정거래 및 시장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의 시장관리방안*을 적용하고 있으나,
 - * 자기주식매매거래계좌 설정, 매매전일 자기주식매매신청서 제출, 호가가격.호가수량.호가시간 제한 등
- 호가가격범위 중 주로 매수 하한과 매도 상한에서 주문이 이루어짐에 따라 실제 체결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*
 - * '14. (~9월) 장중 접속매매의 매수체결률은 32.5%, 매도체결률은 32.6%
- 또한, 호가범위 설정시 참조가격(전일종가, 직전체결가 등) 및 호가범위(+5%, +10Tick 등)가 복잡.다양하여 개선 필요

나. 주요 내용

① 자기주식 매매 호가제도 개선

- 자기주식매매 호가범위 개선을 통한 거래활성화 유도 및 호가범위 단순화를 통한 시장참가자 이해도 제고

구분	현 행	개 선(안)	
장개 시전	매수 매도	전일종가 ~ 전일종가+5% 전일종가-2Tick ~ 전일종가	전일종가±10Tick
장중	매수 매도	Max(당일최고가, 최우선매수호가) Max(최우선매수호가, 직전체결가)-10Tick 호가하한+10Tick Min(최우선매도호가, 직전체결가)	Max(최우선매수호가, 직전체결가)±5Tick Min(최우선매도호가, 직전체결가)±5Tick

* 당일 가격 미형성종목의 경우, 당일최고가 및 직전체결가 대신 기준가격 적용

② 시행시기 : '15년 상반기

가. 추진 배경

- 시장의 투명성 제고 및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신속·정확한 투자정보 제공이 무엇보다 중요
 - 공매도 거래 및 변동성 완화장치(VI) 발동 등에 대한 투자 정보 제공을 통해 시장 투명성을 제고해 나갈 필요

나. 주요 내용

① 공매도 잔고 대량보유 공시제도 도입(유가/코스닥/코넥스)

- 공매도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, 투기적 공매도를 억제하기 위해 공매도 잔고가 투자자에게 공개되는 공시제도를 도입*

* 현재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계류중

② 투자자 제공 정보 개선(유가/코스닥)

- (공매도) 전일 거래내역 상위종목(예:5%)을 Check 등에 제공
- (변동성 완화장치) 당일 VI 발동내역을 장종료 후 제공
- (지수차익거래) 지수차익거래 잔고 현황을 일정기간(예:월별) 동안 집계하여 추후 공표*

* 현재는 회원으로부터 지수차익거래 잔고 현황 정보를 매일 집계하여 즉시 공표

③ 시행시기 : ‘15년 상반기

1. 배당지수선물

가. 상장 추진 배경

- '14.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「주식시장 발전방안」중 “신규 파생 상품 확대” 정책의 일환으로 배당주 투자확대에 대한 위험관리 수단으로서 배당지수선물을 도입
 - 정부의 배당 활성화 정책에 부응하고, ETF·인덱스펀드 등 다양한 금융투자상품의 개발 및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당 관련 위험 관리 및 투자수단 필요

나. 주요 내용

- 최근 저성장·저금리 기조로 인해 국내투자자의 고배당 주식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
 - 거래소는 다양한 투자 수요 층족 및 배당투자 활성화를 위해 '14. 10월 新배당지수 4종*을 발표함
 - * 코스피 고배당 50, 코스피 배당성장 50, KRX 고배당 50, 코스피 우선주지수
 - 新배당지수 4종 중 시장수요가 큰 배당지수를 기초자산으로 선정하여 선물을 상장할 예정
- 시행시기 : 2015년 상반기 예정

2. 위안화 선물

가. 상장 추진 배경

- 정부는 “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”에 따라 위안화 거래시 발생하는 환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위안화선물 도입 추진
 - * 「위안화 거래 활성화 방안」중 위안화선물 도입(‘14.10.31, 관계부처합동)
- 금융위원회는 “주식시장 발전방안”(‘14.11.26), “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”(‘14.6.17)에 위안화 선물 도입을 포함

나. 주요 내용

- 원화.위안화 직거래 등에 따라 무역결제 및 금융상품 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,
- 이에 따라 위안화의 환율변동 위험관리에 필수적인 수단인 위안화 선물을 상장
 - * 기초자산 : 원.위안화(위안화당 원화)
- 위안화 선물의 상장시 상시적인 시장조성을 통해 투자자가 언제든지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
 - * 시장조성자는 매수.매도호가의 제출 의무를 부담하고, 그에 대한 대가로 거래소로부터 수수료 면제, 이익 공유 등의 혜택
- 시행시기 : 2015년 상반기 예정

3. 단기금리선물

가. 도입 배경

- '14.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「주식시장 발전방안」의 “신규 파생상품 확대” 정책의 일환으로 단기금리에 대한 위험관리 수단을 제공하기 위해 단기금리선물 도입을 추진

나. 주요 내용

- 국내 단기자금시장의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, 위험관리에 필수적인 선물 상품이 상장되지 않은 가운데,
 - 관련 금융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단기금리 지표의 신뢰성 제고가 필요한 상황
- 거래소는 단기금리의 지표가 될 수 있는 대상을 검토하여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단기금리선물의 기초자산을 선정한 후,
 - 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단기금리선물을 상장
 - 단기금리선물의 상장시 상시적인 시장조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여 투자자가 언제든지 거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
- 시행시기 : 2015년 하반기 예정

1. 코스닥 주식선물

가. 상장 추진 배경

- ‘14.11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「주식시장 발전방안」중 “코스닥 시장 관련 상품·규제 차별 해소” 정책의 일환으로 코스닥 종목을 기초로 하는 개별주식 선물·옵션 상품의 상장을 추진
 - 현재 상장된 개별주식 선물·옵션의 기초자산을 코스피종목으로 제한하고 있어 코스닥시장에 대한 적절한 위험관리 수단이 부재
- 중소·벤처기업 성장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코스닥시장에 적절한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하여 코스닥시장의 질적 성장 도모

나. 주요 내용

- 일정수준의 거래안정성 및 재무건전성을 충족하는 우량 코스닥 종목을 기초로 하는 개별주식 선물·옵션 상품의 상장 추진
 - 코스닥시장 종목의 경우 주가하락시 주식매도를 제외한 수익 추구 방법이 없어 주가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지적
 - 거래소의 시장조치 여부, 시가총액, 지분분산요건 등 요건을 충족하는 종목의 개별주식선물 조기상장 추진
- 코스닥시장의 특성을 반영하고 시장수요가 높은 종목의 상장을 통해 효율적인 코스닥시장의 투자환경 조성
- 시행시기 : 2015년 상반기 예정

2. 코스닥 新지수 개발 및 지수선물 상장

가. 상장 추진 배경

- 현재 코스닥시장의 주요 지수^{*}를 기반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유동성 부족으로 인해 장기투자자는 코스닥시장을 외면
 - * 스타지수, 코스닥프리미어지수 등
- 코스닥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스타지수선물은 낮은 지수안정성 및 시장추종기능 부족 등으로 거래가 거의 없는 실정
- 투자자는 시장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장기투자를 기피하고 이는 코스닥시장의 변동성을 높여 저평가를 초래

나. 주요 내용

- 코스닥시장 정체성 확립 및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코스닥시장 거래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新지수선물의 상장 추진
- 기술주 중심의 시장지수를 개발하여 코스피 시장과의 차별화를 통해 코스닥시장의 경쟁력 및 정체성을 확립

※ “기술주(Tech Stocks)” 정의

- 지식기반의 기술 관련 사업(technology-related business)을 영위하는 소프트웨어, IT서비스, 바이오기술 등 산업군 회사의 주식
- 기술개발 및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게임, 엔터, 소재·부품 산업 등 지식기반 사업 전반

- 코스닥시장 기반의 파생상품을 통해 기관·외국인 등 대규모 투자자에게 적절한 위험관리수단을 제공하여 장기투자를 유인
- 시행시기 : 2015년 하반기 예정

3. ETF선물 도입

가. 상장 추진 배경

- 최근 국내 투자자의 거래가 급증하고 있는 해외지수 추종 ETF에 대한 위험관리 수요의 충족을 위해 ETF 선물을 상장

나. 주요 내용

- ETF가 대중적인 투자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가운데, 최근 해외 ETF의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
 - * 금년 해외 ETF 거래대금(~11월) : 약 124억원
 - ** 거래대금 상위 해외 ETF 대상 지수 : CSI300, FTSE China A50
- 이에 따라 국내 투자자의 해외지수 추종 ETF 거래시 위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선물 상품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
- 거래소는 해외지수 추종 ETF 중 거래대금 등 시장수요가 큰 ETF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선물을 상장
 - 해외 ETF 선물 상장시 상시적인 시장조성을 통해 투자자가 언제든지 거래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
- 시행시기 : 2015년 하반기 예정

4. 섹터지수선물 기초자산추가 및 제도개선

가. 상장 추진 배경

- '14.6월 금융위원회와 파생상품시장본부가 공동으로 발표한 “파생상품시장 발전방향”에 따라 한국거래소는 '14.11.17일 섹터지수선물 4종*을 신규로 상장

* 코스피200 에너지/화학, 코스피200 정보기술, 코스피200 금융, 코스피200 경기소비재

- 섹터지수선물 신규 상장에 앞서 4종의 코스피200 섹터지수가 국제기준을 반영하여 구성종목이 개편되었으며 '15년 상반기 중 2차 개편작업이 예정

나. 주요 내용

- (기초자산 추가) 글로벌 증시산업분류 체계를 적용한 코스피 200 섹터지수 개편에 따라 섹터지수선물 라인업 확충*

* 산업재, 철강소재, 생활소비재, 건강관리, 통신서비스 등

- (섹터지수선물 상품성 개선) 시장참여자의 투자수요에 맞추어 거래승수 조정, 시장조성자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섹터지수선물 활성화 추진

- 상장 이후 섹터지수선물의 총 거래량은 34계약에 그치는 등 거래가 부진

- 시행시기 : 2015년 하반기 예정

가. 제도개선 배경

- 개인투자자의 경우에도 시장진입 조건이 기관 등 전문투자자와 동일하여 무분별한 투자 및 손실을 초래

나. 주요 내용('14.12.29 시행)

- (일반개인투자자 단계적 시장진입 허용) 일반개인투자자*는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이수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능력을 갖춘 후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고 기본예탁금을 상향 조정

* 일반개인투자자: 법상 전문투자자(투자경험 1년이상, 금융자산 50억원 이상인 개인 포함)를 제외한 일반투자자 중 법인, 단체 및 외국인을 제외한 자

** 다만, 제도 시행 이전에 계좌를 개설한 일반개인투자자 중 시행일 기준 최근 2년 이내에 회원사별로 산출한 미결제약정의 보유일수가 20거래일 이상인 경우 전문투자자는 사전교육 및 모의거래를 면제하고, 계좌별 미결제약정 보유일수가 20거래일 이상인 계좌에 대해 현행 기본예탁금을 적용

- (사전교육 및 모의거래) 사전교육 30시간, 모의거래 50시간을 참여하여야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거래가 가능

- 다만, 위탁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회원별로 산출한 미결제약정의 보유일수가 20거래일 미만인 경우 재이수 필요

* 수강 사이트 : 사전교육(www.kifin.or.kr), 모의거래(<http://trn.krx.co.kr>)

- (기본예탁금) 기본예탁금 3천만원 이상 예탁시 단순 선물 거래가 가능하고, 계좌 개설후 1년이 경과하고 기본예탁금을 5천만원 예탁시 옵션 및 변동성지수선물 거래 가능

* (기본예탁금 차등 적용) 결제불이행 가능성 등에 따라 단순선물은 2천만원 이상에서, 옵션 및 변동성지수선물은 3천만원 이상에서 차별 적용 가능 (최초 적용시에는 3천만원과 5천만원으로 특정)

가. 제도개선 배경

- 「주식시장 발전방안('14.11월, 금융위 발표)」중 “**가격제한폭 확대**”에 따라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이 전일종가 대비 ±30% 수준으로 확대될 예정
- 이에 따라, 현선연계거래 편의를 도모하되 파생상품시장의 급격한 변동성 완화를 위해 파생상품시장 가격안정화장치의 개선을 검토

나. 주요 내용

- (**대상상품**) 기초자산이 주가 변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상품*
 - * 코스피200선물.옵션, 스타지수선물, 주식선물.옵션, 섹터지수선물, 변동성지수선물 및 각 선물스프레드상품
- (**가격제한폭**) 개별주식상품은 주식시장의 가격제한폭과 동일하게 최대 ±30%로 설정하고, 주가지수상품은 최대 ±20%로 설정
 - 3단계 구간을 나누어 시황이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단계로 가격제한폭을 확대
 - * Ex) 코스피200선물 가격제한폭 : ±8%(1단계), ±15%(2단계), ±20%(3단계)
- (**선물CB* 폐지**) 가격제한폭의 단계적 적용에 따라 가격제한폭과 중복된 기능을 수행하게 되는 선물CB 폐지
 - * 주식시장 단일가호가시간 5분 경과 후 직전거래일의 거래량이 가장 많은 주가지수선물 종목의 약정가격이 1분 이상 지속하여 등락(코스피200선물 5%, 스타지수선물 6%)하고, 선물이론가격과 3%이상 괴리 시 발동
- 시행시기 : 2015년 상반기

가. 제도개선 배경

- 호가가격단위(틱사이즈)가 너무 클 경우 거래비용이 증가하여 거래의 효율성이 감소하고 정밀한 위험관리가 곤란
 - * 코스피200옵션은 가격이 3.0p 이상인 경우 0.05p 단위로 거래가 가능하여 1계약당 최소 가격변동금액이 25,000원 ($=0.05p \times 500,000$ (거래승수)) 수준
- 파생상품거래의 효율성 감소는 파생상품 뿐 아니라 주식거래의 동반감소를 야기시킬 수 있음
- 장외수요를 장내화하기 위한 협의대량거래 가능 상품을 코스피200 선물·옵션 등으로 확대하였으며 다른 상품에도 확대 필요

나. 주요 내용

- 호가가격단위 개선
 - (현행) 코스피200옵션의 호가가격단위는 옵션가격 수준*에 따라 차등화되고, 변동성지수선물은 0.05p로 설정
 - * 옵션가격이 3p 이상인 경우 0.05p, 3p 미만인 경우 0.01p
 - (개선) 코스피200옵션의 호가가격단위를 0.01p로 일원화하고, 변동성지수선물은 0.01p로 인하
- 시행시기 : 2015년 상반기

가. 제도개선 배경

- '14.12월 조세특례제한법 법안이 의결됨에 따라, '15년 상반기부터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헤지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
 - 파생상품시장 거래활성화 및 시장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시장조성자의 거래를 세제측면에서 지원

나. 주요 내용

- 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위험회피 목적 주식양도에 대해 증권거래세 면제
 - (대상) 한국거래소와 시장조성계약을 체결한 금융투자매매업자
 - (거래) 주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시장의 조성을 위한 주식 양도
- ※ 단, 시장조성전용 주식계좌를 통해 거래된 위험회피 목적 거래 주식에 한함
- 시행기간 : '15.상반기 ~ '17.12.31

가. 제도개선 배경

- ‘13.12월 파생상품시장 결제불이행 발생에 따른 결제이행재원 사용시 국제기준과 다른 사용순서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
 - * 국제기준 및 해외 주요 청산소(CCP)는 정상회원(non-Default member)의 자산에 우선하여 청산소의 자산을 우선사용 함
-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 구축을 위해 「자본 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등 관련법규 개정 추진
 - * ’14.10월 금융위에서 거래소의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 관련 입법예고 시행

나. 주요 내용

① 거래소 결제적립금 일부 우선사용

- (현행) 결제이행재원 사용순서는 ‘위약회원 증거금 등 → 정상 회원 공동기금 → 거래소 결제적립금 등’의 순서로 되어 있음
 - * 자본시장법 제399조 및 동법 시행령 362조에 근거한 거래소 회원관리규정 제25조에서 정함
- (개선) 결제이행재원 사용 시 정상회원의 공동기금 사용 전에 거래소의 결제적립금 일부를 우선 투입하도록 순서 변경

② 시행시기 : 법 개정시

□ 매매거래 대상 및 기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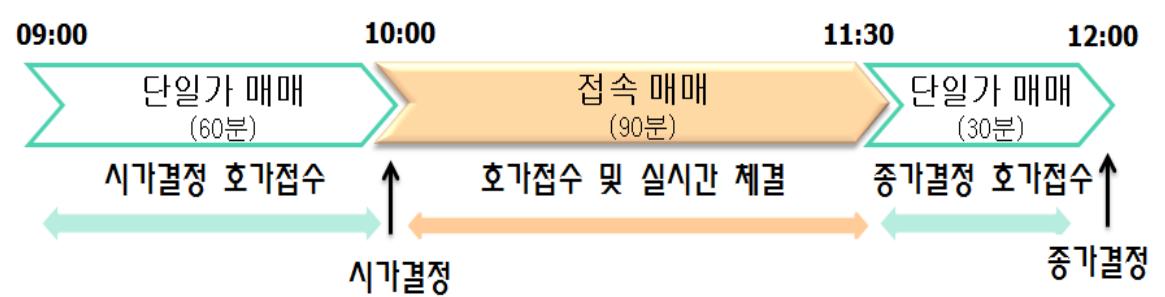
- 거래종목 : 이행연도별 할당배출권 및 상쇄배출권
 - 할당배출권의 매매거래 개시일은 2015년 1월 12일로 하며, 상쇄 배출권의 거래개시일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함
- 거래기간 : 계획기간 최초 거래일부터 해당 이행연도 다음 해의 6월 말까지 거래

【 이행연도별 할당배출권 거래기간 】

거래 종목	1차 계획기간 ('15년 ~ '17년)				2차 계획기간 ('18년 ~ '20년)			
	2015년 이행연도		2016년 이행연도		2017년 이행연도		2018년 이행연도	
	상반기	하반기	상반기	하반기	상반기	하반기	상반기	하반기
15년 배출권		거래가능						
16년 배출권			거래가능					
17년 배출권				거래가능				

□ 매매거래시간

- 10시부터 12시까지(오전거래)



* 자세한 내용은 '14.12.9일 배포한 보도자료 '한국거래소, 배출권 거래시장 제도 확정'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